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Bibliographical Research of *Leuigaegookwonjongongsinnokgwon*

남 권 희 (Nam, Kwon-Hee)*

권 오 덕 (Kwon, Oh-De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의 분석 |
| 2. 족보자료에 나타난 공신녹권
관련 기록 | 4.1 발급사유 |
| 2.1 李稷 開國功臣錄券 | 4.2 수급자 및 수급 대상자 檢討 |
| 2.2 開國原從功臣錄券 | 4.3 포상 및 특전 |
| 3.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全文 | 5. 맺음말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조선 초기 개국원종공신녹권 가운데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하여 그 발급사유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또한 족보자료에서 확인된 조선 초기 개국원종공신녹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본적인 사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첫째, 『太祖實錄』 '1392년(元年) 10월 9日(丁巳) 條'를 보면 柳蔓殊, 李蕤, 金乙貴 등 28명에게 원종공신의 칭호를 내린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인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은 이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들 가운데 李蕤에게 발급된 것임을 실록의 기사 내용과 본 錄券의 내용 대조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族譜類에서 개국공신 및 개국원종공신녹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한 결과 李稷, 潘忠 · 金重寶 · 金成富 · 權仲和 등에게 발급된 녹권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는 실물의 존재여부를 떠나 2차적인 기록으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셋째,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에 나타난 수급 대상자 수는 李蕤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太祖實錄』에 기록된 수급 대상자 수와 동일하지만, 수급자 대상자에 있어서 1명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8명 가운데 11명은 回軍功臣에 책봉된 인물들이다.

넷째,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은 조선 초기에 발급된 것인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 조선 초기 개국원종공신녹권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kwon-1027@hanmail.net)

접수일: 2014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족보류에 나타나는 개국원종공신녹권에 대한 기록은 공신녹권 연구의 外延을 넓혀주는 2차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要語: 李薊, 開國原從功臣錄券, 『太祖實錄』, 족보자료, 開國功臣錄券

<ABSTRACT>

Among Gaegookwonjonggongsinnokgwons of early Joseon Dynasty, this research had analyzed content and reasons of issue of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Leuigaegookwonjonggongsinnokgwon)』. Furthermore, with data of Gaegookwon-jonggongsinnokgwons of early Joseon Dynasty which was discovered in genealogy of people, this study was able to consider it as a useful source. Throughout the research, such following facts were identified.

First, a fact that 28 people including Ryu Man-Soo(柳蔓殊), Lee-Eui(李薊), Guem Eui-Gwi(金乙貴) had received designation of Wonjong meritorious retainer(原從功臣) can be ascertained by the article of 『太祖實錄(Taejosillok)』 ‘October 9, 1392(Jeongsa(丁巳) Jo(條)’. By comparison of the article and the content of Nokgwon, it was recognized that Lee-Eui(李薊) was a person who was given designation of ‘Leuigaegookwonjonggongsinnokgwon’.

Second, during process of arranging data of Gaegookgongsin and Gaegookwonjong-gongsinnokgwon in genealogy, designation records of Lee-Jik(李稷), Ban-Chung(潘忠), Guem Seong-Bu(金重寶), Gwon Jung-Hwa(權仲和) and other people were observed. These records are worthwhile for they are considered as valuable sources for validations of the designations as secondary sources whether they are currently extant or not.

Third, including Lee-Eui(李薊), 28 names of receivers that are stated in 『Leuigaegookwonjonggongsinnokgwon』, matches with the records of 『太祖實錄(Taejosillok)』 except one receiver's name. In addition, 11 receivers out of 28 receivers were designated as Hoegun meritorious retainer(回軍功臣).

Fourth, 『Leuigaegookwonjonggongsinnokgwon』 had been issued in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which is undoubtedly assumed to be conducive to further researches of Gaegookwonjonggongsinnokgwon. In addition, records of Gaegoodwonjonggongsinnokgwon, which was noticed in genealogy will also be able to extend future researches as secondary sources.

Key words: Leui, Gaegookwonjonggongsinnokgwon, *Taejosillok*,
Genealogy data, Gaegookgongsinnokgwon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 초기 개국원종공신녹권 가운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李蕤[嶷] 錄券에 대해 그 발급사유와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태조는 새로운 왕조를 창업한 후 건국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인물들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공신을 등급에 따라 나누어 먼저 開國功臣 44명을 책봉하고(1392년 9월 16일), 10여일 뒤인 9월 27일 上將軍 趙狷·右承旨 韓尙敬·判軍器監事 黃居正 등 7명에게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리며 褒賞을 거행하라는 교서를 都評議使司에 명한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이미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黃希碩에게 개국공신 2등의 칭호를 내리게 된다. 이렇듯 점차 개국공신에 책봉되는 수가 늘어나자 臺諫이 연명하여 상소를 하게 되고¹⁾ 그 과정에서 원종공신제도가 생겨나 이후 제도화 된다.

원종공신에 대한 실록의 첫 기록은 『太祖實錄』 ‘1392년(元年) 10월 9日(丁巳) 條’에서 확인이 된다. 이 기사에서 태조는 28명에 대해 원종공신으로 책봉하라는 교지를 都評議使司에 내린다. 이후 수차례 원종공신을 책봉하게 되는데 문헌기록에 나타난 인원수를 보면 모두 1,698명이다. 이는 새로운 왕조의 창업 유공자들을 포함하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前朝의 관료계층을 회유·포섭하는 의미를 지닌 것²⁾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발급된 功臣錄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서지학·역사학·국어사 등 분야별로 정리가 되었다.³⁾ 따라서 본고에서 공신녹권에 대한 선행연구를 새삼 정리를 하는 것은

1) 『太祖實錄』 1392年(元年) 10月 3日(辛亥).

2) 朴天植, “寶物726號 昌山君 張翼의 原從功臣錄券의 연구,” 『全羅文化의 脈과 全北人物』, (진주: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90), 69.

3)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제도 변경 시기에 대한 재론,” 『古文書研究』 제45호(2014).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진나영, “조선시대에 간행된 『功臣錄卷』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발표의 주제가 開國原從功臣錄券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간 이루어진 공신녹권의 연구 성과 가운데 조선 초기 발급된 개국공신녹권과 개국원종공신녹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다.

<표 1> 조선 초기 공신녹권에 관한 선행연구

녹권명	사급일	판본	비고
李和開國功臣錄券	1392년(洪武25) 9月	筆寫本	朴天植, ⁴⁾ 千惠鳳 ⁵⁾
李稷開國功臣錄券	1392년(洪武25) 9月	筆寫本	南權熙 ⁶⁾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	1392년(洪武25) 閏12月	筆寫本	본 연구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洪武28) 閏9月	筆寫本	朴天植 ⁷⁾
韓奴介開國原從功臣錄券		木活字+木版本	최성기, 梁泰鎮
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文化財指定報告 '92-93 ⁸⁾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朝鮮史料集眞
李和尚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朝鮮史料集眞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千惠鳳
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千惠鳳 ⁹⁾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		木活字+木版本	文化財指定報告 '89, ¹⁰⁾ 박성종 ¹¹⁾
(誠庵所藏)開國原從功臣錄券		木活字+木版本	千惠鳳
龍天奇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南權熙 ¹²⁾
文係宗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洪武28)	筆寫本	許興植
朴淳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朴泰根, 梁泰鎮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筆寫本	朴道植, 서병패 ¹³⁾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洪武28)]		金炯秀 ¹⁴⁾
沈之白開國原從功臣錄券	1397년(洪武30) 10月	木活字本	朝鮮史料集眞, 문화재청
朴乙富開國原從功臣錄券	1397년(洪武30)	筆寫本	密陽朴氏 銀山府院君派世譜

대학원, 2008).

4) 朴天植, “朝鮮 建國功臣의 研究 : 政治勢力 규명의 일환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5).

5) 천혜봉,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집(1988).

6)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4).

이 외에도 남권희는 “『柳觀, 辛克敬, 鄭津 朝鮮 開國原從功臣錄券 연구』”¹⁵⁾에서 원본 자료가 아닌 2차 자료에 대하여 형태서지·국어사·역사 등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였고, 朴盛鍾, 朴鳳淑, 朴天植 등의 저술 및 논고에서 개국공신녹권에 대한 역주작업과¹⁶⁾ 서지적 연구¹⁷⁾ 그리고 정치세력 규명¹⁸⁾의 일환으로 개국공신녹권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진나영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통해 조선시대 간행된 공신녹권과¹⁹⁾ 조선전기 공신녹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여²⁰⁾ 그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족보자료를 통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말선초의 문서기록 중에 개국공신 및 개국원종공신녹권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기본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이 비록 轉寫本이지만 처음 소개가 된다. 는 점에서 녹권의 전문을 제시하고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문 내에 사용된 吏讀과 1392년과 1395년에 발급된 李和開國功臣錄券 및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에 나타난 이두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4장은 본 녹권의 내용 분석을 위해 실록의 기사와 녹권의 본문을 비교 분석하

-
- 7) 朴天植(1990).
 - 8) 文化財管理局 編,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92-93指定編』(서울: 東局, 1994).
 - 9) 천혜봉, “金天理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 『한국비블리아』 제6집(1984).
 - 10) 文化財管理局 編,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89指定編』(서울: 東局, 1990).
 - 11) 박성종,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 수록된 功臣들의 姓名 분석,” 『민족문화논총』 제30집(2004).
 - 12) 남권희, “龍天奇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分析,”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 13) 서병패, “崔有澣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상명사학』 10·11·12권 合本(2006).
 - 14) 金炯秀,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一檢討,”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2004).
 - 15) 남권희, “柳觀, 辛克敬, 鄭津 朝鮮 開國原從功臣錄券 연구,” 『嶺南學』 제15호(2009).
 - 16) 朴盛鍾,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17) 朴鳳淑,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7집(1991).
 - 18) 朴天植(1985).
 - 19) 진나영(2008).
 - 20) 진나영(2014).

여 발급사유 및 수급자와 사급 대상자를 먼저 살펴본 다음 포상, 특전 등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이상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연구는 새로운 자료와 2차 자료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가 조선 초기 개국원종공신녹권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유의미할 것이다.

2. 족보자료에 나타난 공신녹권 관련 기록²¹⁾

여말선초의 실물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대단히 희소한 실정이므로 비록 실물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2차적인 기록으로나마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족보가 일부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族譜類의 자료는 기록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발급과 수급의 내용 그리고 시대배경 및 년월일을 가진 문서류에 한정하여 대상 자료로 삼았다.

2.1 李稷 開國功臣錄券

2.1.1 출전

이 녹권은 1998년에 성주이씨 문경공파종회에서 발행, 간행한 『국역 형재이직선생시집』²²⁾이라는 책의 권말(pp. 448-451)에 아무런 설명 없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의 소장자에 대한 기록 역시 없으나 종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 후손 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21) 족보자료에 대해서는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427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형태, 분석, 원문 등을 추가한 것이다.

22) 이직 著, 홍순석 [외] 編譯, (국역) 『형재이직선생시집』(서울: 성주이씨문경공파종회, 1998).



<그림 1> 李穡 錄券관련 자료

2.1.2 자료의 형태

복사본에 의한 자료의 형태는 卷子本으로 邊欄과 界線이 있으며 상하부분은 닳고 변색된 부분과 파손되어 수리한 곳도 있다. 그 체제나 양식은 문장기술과 행간 등에서 태조 때의 양식과 거의 같으나 원본에 필요한 ‘吏曹之印’이 없고 시행자들의 수결이 없는 등 원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빠져 있다. 또 본문의 처음 시작에 “功臣都監…”에 이어 “翊戴開國功臣前知申事 李穡 本貫”이라는 표현에서 개국공신책봉의 시기나 본관을 기록하지 않은 점에서 원본이 아닌 후대의 필사자료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제작성 되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자료의 보존 상태나 淨書된 상태로도 원본을 대응할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2.1.3 李和 錄券과의 관계

李和 錄券은 조선 초기에 처음으로 발급하는 正功臣錄券으로 발급 관서명, 수급자명, 문서 발급의 내용, 都評議使司의 출납과 공신의 등위에 따라 공적 내용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상급 내용을 등위 및 개인별로 열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행일자와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을 기재하고 수결을 갖춘 것이다. 공신의 총수는 42명이며 이 중 1등은 16명, 2등은 11명, 3등은 15명으로 그 중 이직은 3등 공신에 해당한다.

3등에 대한 賞典은 閣을 세우고 초상화를 모실 수 있고, 功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처는 한 단계 높여 봉작하고, 直子は 蔭職으로 한 단계를 높이며, 만일 자식이 없으면 甥姪이나 사위를 올려준다. 또 발 70結과 노비 7명, 丘史 3명, 把領 6명을 내리며 처음 입사하는 장자에게는 그 녹을 유지하게 하며 자손들은 政案에 개국 3등 공신 누구의 자손이라는 기록을 수록하고 혹 죄를 지어 법을 어겼을 때도 면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전기록과 내용이 두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고 李和의 녹권은 1등에 대한 것이며 이직은 3등에 대한 것이다. 한편 『慶州鄭氏良景公派譜』에 鄭熙啓(?-1396) 녹권과 관련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데,²³⁾ 정희계는 李和와 같은 1등 공신으로 발 170결, 노비 20명을 사급 받고 있다. 따라서 개국공신중 정공신의 녹권내용이 지금까지는 이화 녹권 하나만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원본 녹권으로 李和, 사본으로는 李稷, 2차 자료로는 『慶州鄭氏良景公派譜』에 실린 鄭熙啓 녹권 등이 있다.

23)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編, 『慶州鄭氏良景公派世譜』 1 (서울: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1996), 198-201.

改定功臣錄	
開國功臣 純忠使命 洪武二十五年 壬申七月十六日 益安大君 芳毅等 書義開業 太祖大王 卽位于松京壽昌宮 錄芳毅等 三十九頁	
一等十五員	議政 府旨
益安大君芳毅 太祖第三男(附大匡輔國贈馬韓)	
星山伯克廉(門下侍郎 諡貞節公)	
平壤伯趙浚(諡文忠公)	
上洛伯金士衡(諡翼元)	
興安君李濟(星山人 太祖駙馬諡景武公 配太祖廟)	
義安大君和(太祖異母弟義安伯 諡義昭公 配太祖廟)	
錫林君鄭熙啓(廣州人 崇政館舍議司 事初諡良景特諡武烈 本姓名修蘭賜姓李籍青海帖木兒起自北方 賜穆武贊成事諡 翼烈公 配太祖廟)	
青海伯李之蘭(賜穆武贊成事諡 翼烈公 配太祖廟)	
宜城君南閑(附武公 配太祖廟)	
花山府院君張思吉(安東人 馬義畫 諡贊德 傳翼公)	
西原君鄭摠(清州人 政堂文學 諡文忠公)	
漢山君趙仁沃(漢陽人 史判 諡忠靖公 配太祖廟)	
宜寧府院君南在(太宗廟 諡忠景公)	
清城府院君鄭擇(德之弟 諡景景 配太宗廟)	
益和君金仁贊(楊根人 諡忠公)	
二等九員	
坡平君尹虎(坡平人 世祿 諡靖厚公)	
商山君李敏道(自中國出來 蔚南州判 諡貞憲公)	
戶曹典書趙英桂(新島人)	
復興君趙胖(白川人 國初奉使諸命 和門下府事 諡肅穆公)	
漢川府院君趙溫(漢陽人 贊成 諡良節公)	
南陽君洪吉叟(南陽人 兵判 諡文景公)	
玉川府院君劉敏(初名敬江 陵人文 輔國 諡文衡 諡文偉公)	
平城府院君趙猶(遼之兄 諡平簡公)	
平海君黃希碩(定襄日丁父憂進錄 諡翼武公)	
三等十五員	
興寧府院君安景恭(順興人 進文輔國 諡良度公)	
錫林君金樞(慶州人 贊成 諡典肅公)	
中樞院副使柳愛廷(文化人 諡益靖公)	
星山府院君李稷(星山人 諡文景公)	

<그림 2> 鄭熙啓 錄券관련 자료

2.1.4 원문(일부)

功臣都監

翊戴開國功臣前知申事李稷 本貫
右員乙良開國功臣錄券良中奇是臥
乎事叱段當使與別監同議申言洪武貳
拾伍年玖月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
貳拾伍年八月二十日右承旨韓尙敬次
知 口傳

王旨前朝君位自恭愍王無子薨逝妖僧辛屯之
子禍乘間竊據荒淫無道恣行 年

間妄興師旅將犯上國之境而諸將舉義廻軍禍乃自知其罪傳位子昌王氏已絕者十有六年矣猶尙擇于宗親以定昌府院君瑤權署國事而乃昏迷不法忘經遠之大體見目前之小利知其有私不知有公田制惡其經界之正公廩竭於子婿之用凡爲正人君子則不惟忌憚必欲加罪讒諂面諛則不惟親昵曲加任用賞罰無章以毀國法用度無節而傷民財其禹玄寶李穡等乘間竊弄誣諂功臣以及忠良潛遣私人請兵上國社稷生民幾至滅亡諫官憲司屢上封章請其罪惟聽姻婭婦寺之言曲法赦之讜言之士皆放黜之民怨神怒妖孽屢作禍亂之幾日生不已門下左侍中克廉門下右侍中趙浚門下侍郎贊成事士衡道傳興安君李濟義安伯李和參贊門下府事熙啓之蘭判中樞院事南聞知中樞院事思吉簽書中樞院事鄭摠中樞院副使仁沃中樞院學生南在禮曹典書趙璞大將軍蒙乙鄭擢等識天命之去就人心之向背以民社大義決疑定策推戴寡躬共成大業其功甚大帶礪難忘判三司事尹虎工曹典書敏道大將軍朴苞禮曹典書英珪知中樞院事趙胖平壤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생략)

2.2 開國原從功臣錄券

2.2.1 潘忠 [鄭津, 陳忠貴, 崔有漣, 李和尚] 尹方慶의 예 / 전 30결, 노비 3구

2.2.1.1 출전

이 기록은 1855년에 목활자 5책으로 간행된 『光州潘氏族譜』의 권수부분에

『典書公功臣錄券』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완전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시작 부분에 수급자의 직함과 이름, 본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서공이라는 것으로도 통용되므로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2.1.2 분석

이 녹권은 권말의 시행기관과 담당자의 표시까지 원형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어서 원문을 확인하는 어려움은 없다. 전체의 내용으로는 鄭津의 녹권과 같으므로 陳忠貴, 崔有漣, 李和尚 등과도 같이 나타난다. 賞典에 있어서도 尹方慶의 예에 따라 말 30결, 노비 3명을 내리는 것으로 내용이 같다.

2.2.1.3 반충의 가계

고려 때 岐城君 潘岳을 시조로 하며 上系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족보에서는 반충으로부터 권1을 시작하고 있다. 반충의 아들은 吏曹判書를 지낸 思濟와 兵曹參議에 贈職된 思德 등 두 아들이 있다.

2.2.1.4 원문

[右]員[乙] 原從功臣錄券[良中] 奇[是臥事叱段]
洪武二十五年 十月 日 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二十五年 十月初九日 都承旨 安景恭 次知
口傳
王旨 義興親軍衛 簽節制使允壽 定州府使 皇甫蓋 等二百十
三員 [亦] 勤勞於內 或奔走於外 積以歲月
予甚多之 及凶徒結儻謀亂 變生不測 乃能從一二將相之計
請聲其惡凶徒 伏辜以勞 功在{臣}所當賞 其功臣之號 褒賞
之典 有司舉行[爲良如 教事是{是事}去有等以

王旨內 事意[乙用良] 啓受[使內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六年 十二月 日 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二十六年 七月二十二日 都承旨 李稷[次知]

口傳

(생략)

2.2.2 金重寶 [張寬, 韓奴介, 沈之伯, 文係宗, 朴淳]

2.2.2.1 출전

이 기록은 1991년 활자본 상하 1책으로 간행한 『金海金氏世譜』; 副正公孝先派 編(敬順王後孫)의 pp.481-493에 걸쳐²⁴⁾ 「錄卷」이라는 제목아래 수록되어 있다.

錄卷	功臣都監	功臣前上護軍金重寶	右員乙原從功臣錄卷良如可是夙乎事叱段洪武二十五年十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二十五年十月初九日都丞旨安景恭次知	口傳	王旨義興親軍衛僉節制使允壽定州都護府使皇甫蓋等二百十三員亦勳勞於內或奔走於外積以歲月	予甚多之及兇徒結儻謀亂變生不測乃能從一二將相之計請聲其惡兇徒伏辜以勞以功在所當賞其功臣之號褒賞
----	------	-----------	---	----	--	---

<그림 3> 金重寶 錄券 관련 자료

24) 金賢禎 編, 『金海金氏世譜』; 副正公孝先派 上 (大田: 大都印刷社, 1991).

2.2.2.2 분석

이 자료도 반중의 녹권과 같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수록하고 있으나 권수부분 첫 행 “功臣前上護軍金重寶 …”에서 뒷부분에 본관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은 족보내의 자료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의 내용과 수급 대상자 그리고 賞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알려진 張寬, 韓奴介, 沈之伯(포함내용상), 文係宗, 朴淳의 것과 일치하며 상전의 내용도 大將軍 李和英의 예에 따라 발 15결을 226명에게 내리고 있으며 노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동일하다.

2.2.2.3 김중보의 가계

金閼智의 45세손이며, 敬順王의 18세손, 金海貫祖인 濂의 16세손으로 益和君 金仁贊의 4째 아들인 從南의 세 아들 重寶, 龍寶, 信寶 중 장남이다. 그의 祖父인 金인찬(?-1392)은 1383년 北靑千戶였다가 태조를 따라 韓忠과 함께 1388년 回軍에 참여하고 1390년에 密直副使, 1392년에 同知密直司事에 올랐다가 곧 죽었으며 부 金從南은 1401년 태조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은 후 威興으로 갈 때 어가를 수행하였다가 환궁하도록 한 뒤 북청에 은거하였다.

2.2.2.4 원문

錄券/

功臣都監/

功臣 前上護軍 金重寶/

右員乙 原從功臣錄券良如可 是臥平事叱段 洪武 二十五/

年 十月日 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 二十五年 十月 初九/

日 都承旨 安景恭 次知/

口傳/

王旨 義興親軍衛 簽節制使 允壽 定州都護府使 皇甫盖 等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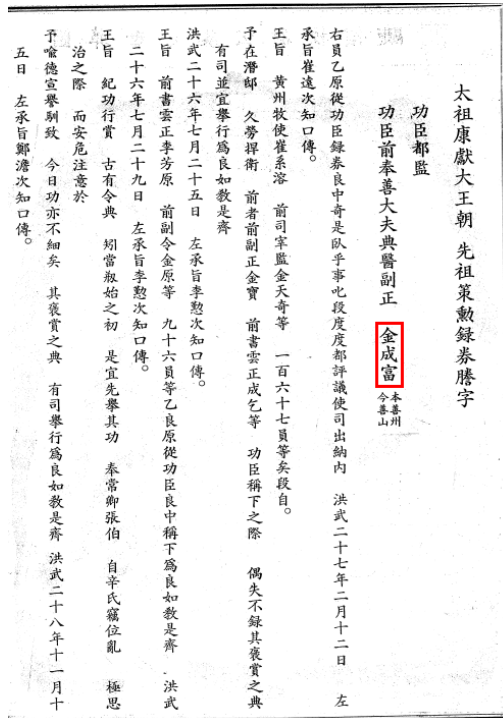
百十三員 亦 勳勞於內 或奔走於外 積以歲月/
予 甚多之 及兇徒結儻謀亂 變生不測 乃能從一二將相之計/
請聲其惡兇徒 伏辜以勞 以功在所當賞 其功臣之號 褒賞/
之典 有司舉行爲良如 教事是去有等以/
王旨 內事意乙用良 啓受 使內行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
六年 十二月 日 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 二十六年 七月/
二十二日 都丞旨 李稷 次知/
口傳/
王旨 南陽伯 永通領三司事 宗源 等 一百二十七員 亦 自辛氏/
竊位亂極 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
予 喻德宣譽 馴致今日功 亦不細矣 褒賞之典 有司舉行爲/
良如教是齊 洪武 二十六年 七月 二十七日 左丞旨 李懃(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其功 判開/
(생략)

2.2.3 金成富 [沈之伯]

2.2.3.1 출전

이 자료는 1986년에 활자본으로 간행한 『선산김씨대동보』의 제1책의 「판서공과 세적편」에 ‘太祖康獻大王朝 先祖策勳錄券牒字’라는 제목으로 수록²⁵⁾되어 있다.

25) 善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善山金氏大同譜』卷1 (慶北: 善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6), 330-332.



〈그림 4〉 金成富 錄券 관련 자료

2.2.3.2 김성부의 가계

그는 善山 김씨의 16세손인 文의 네 아들 成元, 成富, 成龍(개국원종공신), 成呂 중 둘째로 1336년에 태어나 初諱는 富였으나 후에 첨가하였으며 正憲大夫 行戶曹判書 和義君에 봉해졌으므로 判書公派의 中始祖가 되었다. 대대로 開城의 中部 弘道 2리에 거주하면서 이성계를 측근에서 보좌하다가 왕자의 난으로 함흥으로 移御할 때 安東君 金哲, 典書公 沈之伯과 더불어 따랐다가 還都할 1401년에 吉州, 端川으로 옮겨 나오지 않았다. 아들로는 敬道(1370-?)가 있어 후에 行密陽教授를 지냈다.

2.2.3.3 분석

이 녹권은 1397년(태조 6)에 내려진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녹권 중 동아대학교 소장의 목활자로 간행된 沈之伯 녹권과 내용상으로 같으나 권말부분에서 달라져,

錄事 吏曹 知吏曹事 別監

錄事 權知都評議錄事 前左右衛 保勝別將

韓

判事 推忠協贊開國功臣 嘉靖大夫 簽書中樞院 都評議使司 寶文閣學士 兼 成均館大司成

劉

判事 資憲大夫 三司 右僕射 同判 都評議使司事

李

중에서 첫 행이 달라지고 아래 3행은 내용은 같으나 判官 2, 副使 2, 使 2, 吏曹左郎 2, 正郎 2, 議郎 2, 典書 2, 兼典書 1, 判事 1, 別監 3명의 명단과 수결이 생략되어 있다.

한편 沈之伯은 이미 1395년에 내려진 張寬의 녹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賞給의 내용도 大將軍 李和英의 예에 따라 발 15결을 지급하고 父母・妻를 봉작하고 자손에게 蔭職의 혜택을 주며 공을 기리는 비석을 세울 수 있고 녹권을 만들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장관의 녹권과 일치한다.

2.2.3.4 원문

太祖康獻大王朝 先祖策勳錄券謄字

功臣都監

功臣 前奉善大夫 典醫副正 金成富 本善州(今善山)

[右]員[乙] 原從功臣錄券[良中] 奇[是臥事叱段] 度度 都評議使司 出納內

洪武二十七年 二月十二日 左

承旨 崔遠 次知 口傳

王旨 黃州牧使 崔系溶 前司宰監 金天奇 等 一百六十七員 [等矣段]

自予在潛邸 久勞捍衛 前者前副正 金寶 前書雲正成乞 等 功臣稱下之際

偶失不錄其褒賞之典 有司並宜舉行[爲良如教是齊]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五日 左承旨 李懃[次知] 口傳

王旨 前書雲正 李芳原 前副令 金原 等 九十六員[等乙良] 原從功臣[良中] 稱下[爲良如教是齊]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 左承旨 李懃[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翊始之初 是宜先舉其功 奉常卿 張伯

自辛氏竊位亂 極思治之際 而安危注意於 予喻德宣譽馴致 今日 功[亦]不細矣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 教是齊]

洪武二十八年 十一月 十五日 左承旨 鄭澹[次知] 口傳

王旨 前中郎將 崔原 崔仁奇 等 十八員[等乙良] 原從功臣[良中] 並以

稱下[爲良如 教右如 教事是去有等以]

王旨 內事意[乙用良 使內 向事 爲等如] 出納[是白置有亦]

王旨 內[貌如]功勞可尙[是白教等 用良 更良] 功臣職名 單字 申聞[爲白叱乎 亦中 科科以]

落點分例 [教矣]

前黃州牧使 崔系溶

商議中樞院使 柳原之

檢校中樞院使 盧乙俊

前典書 任天年 郭萬慶

前判事 金仁奇 朱者音不花

前僉正 崔毛多吾 申完

前司宰監 金天奇 沈松

前摠郎 金松

前少尹 延上左 金贊

前副正 李長壽 李冲 金成富

前副令 金原 李仁 沈之伯

前少監 金章 金奉 金程

前中郎將 將池原 韓松 崔安彥 崔之澤 崔冲 魯成佐 沈仁忠 金永守 李卿

朱大 李成 嚴仁甫 金哲 金仁 金貴 安仁甫

郎將 金連 林仁吉 劉末巾

前郎將 朴彥 趙仁奉 崔甫 崔碩 李夫介 李萬 宋仁儉 蔡河生 宋文 朴丁

前別將 李白 劉天富 金冲 姜原 鄭龍 金奇 車萬 高天柱 朴松 李原 金哲

朴奇嚴 李天奇 宋仁儉 宋仁祐

前散員 李仁 裴今音松 李原 金龍 李生 蔡原 李松 李甫介

前伍尉 朴生員

[等乙良] 大將軍 李和英 例以 田十五結[爲等如] 各各 賞給[爲良於爲]

右員[等乙良] 原從功臣稱下[教是旆]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後世[教是齊] 賞賜[乙良置]

分例[教貌如使內白旆] 立碑紀功[向事 并以] 各掌官出納[爲白遣] 錄券成給[爲良如教喻乃] 申聞[爲白叱乎 亦中]

洪武三十年 九月 十一日

都承旨 通政大夫 經筵 參贊官 集賢殿 直學士 知制教 知吏曹事 臣 鄭澹 伏奉 王旨 依申[教事是白有良示]錄券施行

洪武三十年 十月 日

錄事 吏曹 知吏曹事 別監

錄事 權知都評議錄事 前左右衛 保勝別將

韓

判事 推忠協贊開國功臣 嘉靖大夫 簽書中樞院 都評議使司 實文閣學士 兼 成均館大司成

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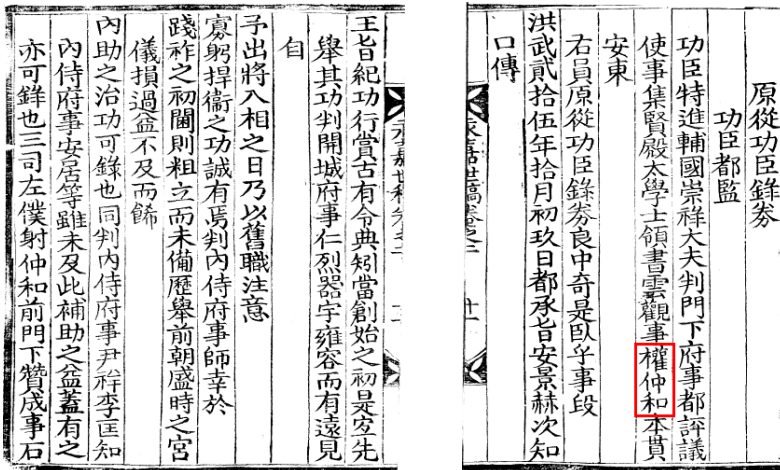
判事 資憲大夫 三司 右僕射 同判 都評議使司事

李

2.2.4 權仲和

2.2.4.1 출전

이 기록은 木板本 4권 2책으로 간행된 『永嘉世稿』의 권2(제11-13장)에 「原從功臣錄券」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림 5> 『永嘉世稿』 卷2 11장, 權仲和 錄券관련 자료

2.2.4.2 내용 및 비교

이 기록은 완전한 기록이 아니고 앞부분의 일부와 녹권을 받은 인물부분, 상급 내용만을 수록하였다. 이 중 洪永通, 沈德符, 康舜龍, 李茂芳, 成汝完, 南乙蕃, 權仲和, 安翊, 趙希古, 朴遠의 10인을 參贊門下府事 金立堅의 예에 따라 말 30결과 노비 3명을 지급하고 부모와 처를 봉작하고 자손을 음직으로 하며 후세까지 賞典이 미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2.4.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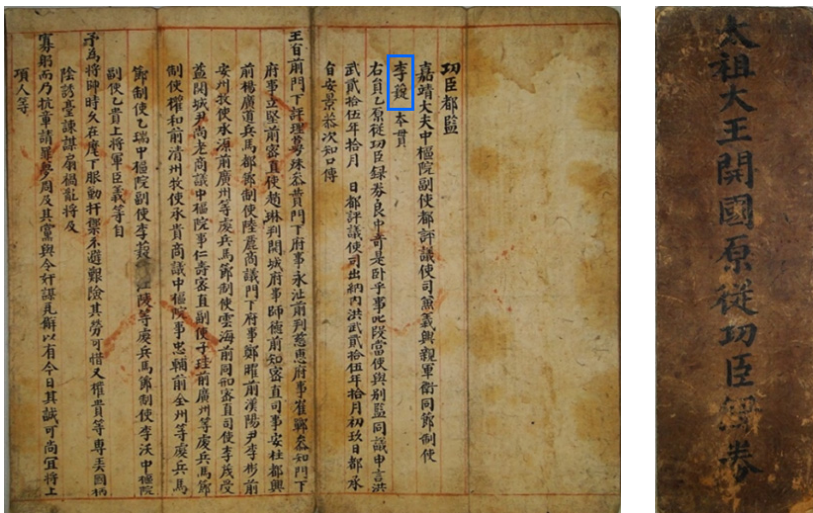
앞부분에서는 1392년(洪武 25) 10월 도승지 安景恭 차지로 시작하여 1393년(흥무 26) 7월 29일에 좌승지 李懃이 口傳을 맡은 부분으로 끝나고 있으며 뒷부분의 시행관청과 담당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현재 전하고 있는 녹권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물이 없으며 賞典의 내용으로 보면 鄭津이나 潘忠, 陳忠貴, 李原吉의 녹권들과 같은 등급이다. 또 현재까지의 녹권 중 金立堅의 예를 따르는 내용은 없으므로 별도로 작성되어 내려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4.4 원문

- 11ㄸ- 3 原從功臣錄券
11ㄸ- 4 功臣都鑑
11ㄸ- 5 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判門下府事都評議
11ㄸ- 6 使事集賢殿太學士領書雲觀事 權仲和 本貫
11ㄸ- 7 安東
11ㄸ- 8 右員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段
11ㄸ- 9 洪武貳拾伍年拾月初玖日都承旨安景赫[恭]次知
11ㄸ-10 口傳
11ㄸ- 1 王旨紀功行賞古有令典矧當創始之初是宜先
11ㄸ- 2 舉其功判開城府事仁烈器宇雍容而有遠見
11ㄸ- 3 自
11ㄸ- 4 予出將入相之日乃以舊職注意
11ㄸ- 5 寡躬捍衛之功誠有焉判內侍府事師幸於
11ㄸ- 6 踐祚之初闕則粗立而未備歷舉前朝盛時之宮
11ㄸ- 7 儀損過益不及而歸
11ㄸ- 8 內助之治功可錄也同判內侍府事尹祥李匡知
11ㄸ- 9 內侍府事安居等雖未及此補助之益蓋有之
11ㄸ-10 亦可錄也三司左僕射仲和前門下贊成事石
(중략)
13ㄸ- 4 王旨內貌如功勞可尙是白教等用良更良功臣
13ㄸ- 5 職名單子印
13ㄸ- 6 問爲白叱乎亦中科科以
13ㄸ- 7 落點分例教矣南陽伯洪永通卒領三司事安宗
13ㄸ- 8 源清城伯沈德符載寧府院君康舜龍光陽府
13ㄸ- 9 院君李茂芳昌寧府院君成汝完宜寧府院君
13ㄸ-10 南乙蕃判門下府事權仲和前門下贊成事安
13ㄸ- 1 翊檢校門下府事趙希古判中樞院致仕朴遠
13ㄸ- 2 員等乙參贊門下府事金立堅例以田參拾結
13ㄸ- 3 奴婢參口爲等各各賞給爲爲分例教是是

- 13ㄸ- 4 白有良爾右員等乙良原從功臣
13ㄸ- 5 稱下教是姊父母妻封爵子孫蔭職宥及後世教
13ㄸ- 6 是齊

3.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全文



<그림 6>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표지 및 권수면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장정형태는 折帖本이고 표제는 ‘太祖大王開國原從功臣錄券’으로 墨書되어 있다. 전체 15面인데 한 면당 6行이고, 총 行數는 90行으로 한 行의 최대 글자 수는 29字며 註는 小字雙行으로 된 필사본이다. 판식을 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계선은 朱絲欄으로 되어 있다.

- 001 功臣都監
002 嘉靖大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兼義興親軍衛同節制使

- 003 李蕤 本貫
- 004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叱段當使與別監同議申言洪
- 005 武貳拾伍年拾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貳拾伍年拾月初玖日都承
- 006 旨安景恭次知口傳
- 007 王旨前門下評理蔓殊參贊門下府事永沚前判慈惠府事崔鄆參知門下
- 008 府事立堅前密直使趙琳判開城府事師德前知密直司事安柱都興
- 009 前楊廣道兵馬都節制使陸麗商議門下府事鄭曜前漢陽尹李彬前
- 010 安州牧使承源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雲海前同知密直司使李茂受
- 011 益開城尹尙老商議中樞院事仁壽密直副使子珪前廣州等處兵馬節
- 012 制使權和前清州牧使承貴商議中樞院事忠輔前全州等處兵馬
- 013 節制使乙瑞中樞院副使李蕤[前]江陵等處兵馬節制使李沃中樞院
- 014 副使乙貴上將軍臣義等自
- 015 予爲將帥時久在麾下服勤扞禦不避艱險其勞可惜又權貴等專弄國柄
- 016 陰誘臺諫謀扇禍亂將及
- 017 寡躬而乃抗章請罪夢周及其黨與令奸謀瓦解以有今日其誠可尙宜將上
- 018 項人等
- 019 稱下原從功臣之號其同知中樞院事永忠出尹漢陽上將軍方慶
- 020 時丁母憂不在抗章之列不可以一時之故忘其舊日之勞功臣之號亦
- 021 與上同褒賞之典有司舉行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有良爾
- 022 王旨內事意乙用良科科以啓使內向事貼是有亦
- 023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右事叱段前門下評理柳蔓殊參贊門下府事
- 024 崔永沚前判慈惠府事崔鄆參知門下府事金立堅前密直使趙
- 025 琳判開城府事尹師德前知密直司事安柱都興前楊廣道兵馬
- 026 都節制使陸麗商議門下府事鄭曜前漢陽尹李彬前安州
- 027 牧使李承源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崔雲海前同知密直司使
- 028 李茂金受益開成尹具尙老商議中樞院事李仁壽前密直副
- 029 使鄭子珪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權和前清州牧使王承貴
- 030 商議中樞院事郭忠輔前全州等處兵馬節制使陳乙瑞中樞
- 031 院副使李蕤前江陵等處兵馬節制使李沃中樞院副使金乙
- 032 貴上將軍鄭臣義等方

- 033 殿下潛邸之時服勤扞禦不避艱險而又權貴等專弄國柄謀扇禍
 034 亂而乃抗章請罪令其奸謀黨與瓦解以有今日 爲白乎所
 035 王旨內 兗如 其勞可惜其功可尙 是白有良爾 右員 等乙良 原從功
 036 臣
 037 稱下立碑紀功田地幾結奴婢幾口 爲等如 褒賞 令是良如教是
 038 齊 同知中樞院副事朴永忠出尹漢陽上將軍方慶時丁母憂雖
 039 不在抗章之列
 040 王旨內 兗如 不可以一時之故忘其舊日之勞 是白有良 功臣號及褒賞
 041 乙良 上項功臣之例 以使內良如教是齊 立碑 乙良 繕工監紀功 乙
 042 良 藝文春秋館
 043 賜給田地丁號申
 044 聞 乙良 戶曹奴婢花名申
 045 聞 乙良 都宮殿中寺 爲等如 出納各掌官 爲遵 錄券成給 爲良如
 046 教喻乃 謹錄申
 047 聞 爲白乎亦中 洪武貳拾伍年拾貳月拾伍日左承旨翊戴開國功
 048 臣通政大夫經筵參贊官知吏曹事臣李懃伏奉
 049 王旨依申 教矣 前門下評理蔓殊參贊門下府事永沚 等亦中乙良
 050 田地各伍拾結 式 奴婢 并 各伍口 式 商議中樞院事忠輔上將軍臣
 051 義等亦中乙良 田地各肆拾結 式 奴婢 并 各肆口 式 前判慈惠府事
 052 崔鄂參知門下府事立堅判開城府事師德前知密直司使都興前
 053 節制使陸麗商議門下府事鄭曜中樞院副使李薊乙貴同知中
 054 樞院事永忠前密直司趙琳上將軍方慶 等亦中乙良 田地各參拾結
 055 式 奴婢 并 各參口 式 前知密直司事安柱前漢陽尹李彬前安州牧
 056 使承源前廣州牧使雲海前同知密直司事李茂受益開城尹尙老商
 057 議中樞院事仁壽前密直副使子珪前廣州節制使權和前清州牧使承貴前
 058 全州節制乙瑞前江陵節制使李沃 等亦中乙良 田地各貳拾
 058-1 (伍結 式 奴婢 并 各貳口 式 爲等如科科以)
 059 賜給 爲乎矣 田地 乙良 本鄉京畿中各各所求 以 軍須田地 乙用良 折給 爲
 060 齊 奴婢 乙良 式鄉官奴婢 乙用良 有處 以
 061 賜給 爲良如 教右 教事是去有良爾 錄券施行

- 062 洪武貳拾伍年閏拾貳月日
063 錄事式目都監錄事崔
064 錄事敦勇副尉備巡衛中領別將景
065 判官
066 判官奉訓郎試軍資監承朴
067 副使朝散大夫禮賓少卿權
068 副使奉正大夫吏曹議郎柳
069 使中訓大夫殿中卿直修文殿曹
070 使通訓大夫判校書監事宋
071 判事前奉翊大夫藝文館提學兼判司水寺事同知經筵事安
072 判事前奉翊大夫知密直司事兼都議使司使兼禮賓寺事進賢館提學尹
073 判事前資憲大夫藝文春秋館大學士閔
074 都監員
075 左郎承議郎金
076 佐郎承議考功佐郎李
077 正郎通德郎兼都評議使司檢詳條例司檢詳全
078 正郎通德郎兼尙瑞丞朴
079 議郎
080 議郎奉正大夫李
081 知曹事
082 典書
083 典書嘉善大夫經筵講讀官鄭
084 兼典書
085 判事
086 吏曹員
087 別監
088 通政大夫中樞院右副承旨經筵參贊官知工曹事崔
089 果毅將軍備巡衛上將軍康
090 朝奉大夫試司憲侍史甲

4.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분석

4.1 발급사유

『태조실록』 ‘1392년(元年) 10월 9일(丁巳) 條’를 통해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발급사유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太祖 2卷, 1年(1392 壬申 / 明 洪武 25年) 10月 9日(丁巳)
 - 都評議使司에 교지 내림.
 - 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麾下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며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으니, 그 공로가 可惜하다.
 - 鄭夢周 등이 國權을 전단하고 臺諫을 몰래 부추겨 禍亂을 선동하여 내 몸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는 疏章을 올려 정몽주와 그 무리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악한 계획을 瓦解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 前 門下評理 柳蔓殊 · 參贊門下府事 崔永訖 · 判慈惠府事 崔鄆 · 參知門下府事 金立堅 · 前 密直使 趙琳 · 判開城府事 尹師德 · 商議中樞院事 黃希碩, 前 知密直司事 安柱 · 都興, 前 楊廣道兵馬都節制使 陸麗 · 商議門下府事 鄭曜 · 前 漢陽尹 李彬 · 前 安州牧使 李承源 ·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 前 同知密直司事 李茂 · 金受益, 前 開城尹 具成老 · 商議中樞院事 李仁壽 · 前 密直副使 鄭子珪 ·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權和
 - 前 淸州節制使 王承貴 · 商議中樞院事 郭忠輔 · 前 全州節制使 陳乙瑞
 - 中樞院副使 李薊 · 江陵節制使 李沃 · 中樞院副使 金乙貴
 - 이에 ‘原從功臣’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위의 기사를 통해서 조선시대 최초로 원종공신의 칭호를 받은 인물은 모두 28명으로, 이들은 모두 태조가 高麗朝廷에 있을 때부터 麾下에서 艱難辛勞를 함께한 인물들이다. 이에 태조는 1392년 9월 16일과 27일 개국공신을 책봉한 뒤 10여 일이 지나 28명에 대해 그 공로와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원종공신으로 책봉하라는 교지를 都評議使司에 내린다. 『태조실록』의 이러한 내용은 3장에서 제시한 녹권의 원문 007-02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 녹권이 사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써의 의미가 크다.

4.2 수급자 및 수급 대상자 檢討

4.2.1 수급자

본 녹권의 수급자인 李蕤의 본관은 羽溪로 고려 때 文下省의 中書舍人을 거쳐 左僕射를 지낸 李陽植을 시조로 한다. 李陽植은 원래 慶州李氏로 고려 인종 때 中書舍人 左僕射를 지낸 李宣用의 차남으로 만년에 강릉의 속현이던 우계현에 터를 잡아 관향으로 삼고 分籍하여 羽溪李氏의 시조가 된다. 李蕤의 字는 原君, 호는 退隱, 고려 말기의 武臣이며 모친은 上護軍遼東都指揮使를 지낸 南星老의 딸이고 부인은 順興安氏로 안영부의 딸이다.

<표 1> 羽溪李氏 世係圖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陽	純	適	洪	球	伯	思	蕤
植	祐	適	俊	球	卿	誠	

李蕤는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뒤, 1388년 江界元帥로 있을 때 江界元帥 洪仁桂와 함께 요동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죽이고 돌아오니, 우왕이 기뻐하여 金頂兒와 무늬 있는 비단을 내렸다.²⁶⁾ 이후 1392년 음력 6월 金用超 · 金乙貴 · 金樞 등과 함께 밀직부사에 임명되었다.²⁷⁾ 왕조가 바뀌어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그를 가정대부 중추원부사 겸 도평의사사에 제수하였으나 절의를 지켜 벼슬을 버리고 順興으로 물러나 여생을 보냈다. 태조는 여러 차례 소명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하고 田土와 奴婢를 하사하였다. 한편 安珦의 19대손인 安廷球(1803~1863)가 편한 順興邑誌인 『梓鄉誌』를 보면, 李蕤는 晩年에 九阜마을에서 살았다는 기록과 그의 墓가 檜石에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26) 『高麗史』 제137권, 열전 제50.

27) 『高麗史』 제46권, 세가 제46, 공양왕 2.

4.2.2 수급 대상자

『태조실록』 ‘1392년(元年) 10월 9일(丁巳) 條’의 기사와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에 나타난 녹권의 수급자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급 대상자 비교

『태조실록』 1392년(元年) 10월 9일(丁巳) 條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
前 門下評理 柳蔓殊	前 門下評理 柳蔓殊
參贊門下府事 崔永沚	參贊門下府事 崔永沚
前 判慈惠府事 崔鄂	前 判慈惠府事 崔鄂
參知門下府事 金立堅	參知門下府事 金立堅
前 密直使 趙琳	前 密直使 趙琳
判開城府事 尹師德	判開城府事 尹師德
商議中樞院事 黃希碩	前 知密直司事 安柱
前 知密直司事 安柱	前 知密直司事 都興
前 知密直司事 都興	前 楊廣道兵馬都節制使 陸麗
前 楊廣道兵馬都節制使 陸麗	商議門下府事 鄭曜
商議門下府事 鄭曜	前 漢陽尹 李彬
前 漢陽尹 李彬	前 安州牧使 李承源
前 安州牧使 李承源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	前 同知密直司事 李茂
前 同知密直司事 李茂	前 同知密直司事 金受益
前 同知密直司事 金受益	前 開城尹 具尙老
前 開城尹 具成老	商議中樞院事 李仁壽
商議中樞院事 李仁壽	前 密直副使 鄭子珪
前 密直副使 鄭子珪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權和
前 廣州等處兵馬節制使 權和	前 淸州牧使 王承貴
前 淸州節制使 王承貴	商議中樞院事 郭忠輔
商議中樞院事 郭忠輔	前 全州等處兵馬節制使 陳乙瑞
前 全州節制使 陳乙瑞	中樞院副使 李蕤
中樞院副使 李蕤	前 江陵等處兵馬節制使 李沃
前 江陵節制使 李沃	中樞院副使 金乙貴
中樞院副使 金乙貴	上將軍 鄭臣義
同知中樞院事 朴永忠	同知中樞院事 朴永忠
上將軍 尹方慶	上將軍 尹方慶

위의 <표 2>를 보면 실록의 商議中樞院事 黃希碩과 녹권의 上將軍 鄭臣義가 수급 대상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商議中樞院事 黃希碩(?-1394)은 고려 말 조선 초 武臣으로 平海가 본관이고 고려 때 侍中을 지낸 黃裕中の 후손이며, 부친은 판서 黃天祿이다. 1388년 청주상만호로서 예하군사를 이끌고 右軍都統使 李成桂의 휘하에 들어갔으며 이성계의 回軍에 동참한 공으로 1389년(공양왕 1) 회군공신에 책봉이 된다. 이후 1392년 10월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가 11월에 다시 개국공신 2등의 칭호를 받게 되는데,²⁸⁾ 이것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원종공신녹권 발급 대상자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鄭臣義는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으로 고려 왕실에서 벼슬을 하다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공으로 개국원종공신에 오른다. 이후 1393년 증추원부사를 역임하였고²⁹⁾ 1395년 漢城府尹이 되었을 때 正朝使인 藝文春秋館大學士 柳珣의 부사로 명나라를 간다.³⁰⁾ 이듬해인 1396년 설날을 맞아 올린 表箋에 명나라를 무시한 글이 있다는 이유로 柳珣와 함께 억류되었다.³¹⁾ 11월 억류에서 풀려나기에 앞서 태조는 위로의 뜻으로 그를 烏川君에 봉하였다.³²⁾ 1397년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라고 하여 巡軍獄에 갇혔다가 寧海鎭으로 유배되었으며,³³⁾ 謝貼과 田民을 몰수당하였다.³⁴⁾

『李薺開國原從功臣錄券』에 나타나는 사급 대상자는 李薺를 제외하면 모두 27명이다. 그 중 11명은 1390년에 회군공신(柳蔓殊, 李茂, 李彬, 崔鄆, 崔雲海, 陸麗, 李承源, 尹師德, 具成老, 朴永忠, 鄭曜)으로 책봉이 되기도 하였다.³⁵⁾ 이들은 모두 고려 말 조선초기의 인물들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그리고 實錄

28) 『태조실록』, ‘1392년(元年) 11월 19日(丙申) 條’에 황희석을 개국공신 2등으로 책봉하게 되는 기사가 보인다.

29) 『태조실록』, 1393년(2年) 11월 6日(丁未) 條.

30) 『태조실록』, 1395년(4年) 10월 10日(庚子) 條; 遣太學士柳珣漢城尹鄭臣義如京師賀明年正.

31) 權近의 『陽村集』卷27을 보면 왕명을 받들어 「使臣柳珣, 鄭揚, 鄭臣義等災厄消除速還本國之願疏」를 짓기도 하였다.

32) 『태조실록』, 1396년(5年) 6월 1日(丁亥) 條.

33) 『태조실록』, 1398년(7年) 8월 26日(己巳) 條.

34) 『태조실록』, 1398년(7年) 9월 21日(癸巳) 條.

35) 『高麗史』 제45권, 「世家」 제45, 공양왕 경오 2년(1390) 條.

등의 사료에 그 생애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료에 나타난 수급 대상자 기록

수급 대상자	● : 실록 1392년 開國原從功臣錄券(10월 9일 기사) ◆ : 고려사 1390년 回軍功臣 ◆ : 실록 1393년 回軍功臣(7월 22일 기사)		
柳蔓殊 ?-1398	●	◆	◆(1등 공신)
	■ 사료기록 - 본관은 文化, 자는 得休, 고려 후기 崔氏武人政權을 무너뜨리고 현달한 僉議中贊 柳澈의 후손. - 原從功臣 柳蔓殊 등이 임금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1392년 12월 25일 기사)		
崔永訢 1331-1403	●		◆(1등 공신)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 때의 문신, 본관은 海州,父는 대호군 淙, 시호는 襄武.		
崔鄆	●	◆	◆(3등 공신)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1388년 遼東征伐 때 安東元帥로서 左軍都統帥 曹敏修의 휘하로 출정, 威化島에서 回軍.		
金立堅 1340-1396	●		
	■ 사료기록 - 고려 말·조선 초의 무신, 福山 사람으로,父는 원나라의 巡訪萬戶를 지낸 於珍이다. 시호는 良平. - 홍건적의 침입으로 福州(지금의 경상북도 안동)로 피난할 때, 대호군으로 여가를 호종, 2등 공신에 녹훈됨.		
趙琳 ?-1408	●		
尹師德 ?-1394	●	◆	◆(2등 공신)
	■ 사료기록 - 고려 후기의 무신, 鷄林 杞溪 사람, 우왕의 요동정벌에 助戰元帥로 右軍都統 李成桂의 휘하에 있으면서 위화도회군 때 회군하여 崔瑩을 제거함.		
安柱	●		
	■ 사료기록 -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 병마사·밀직사 등을 지냄.		
都興	●		
陸麗	●	◆	
鄭曜 [1313-1414]	●	◆	◆(2등 공신)
	■ 사료기록 - 草溪 사람으로 內侍 出身, 시호는 胡僖公이다.		

수급 대상자	● : 실록 1392년 開國原從功臣錄券(10월 9일 기사) ◆ : 고려사 1390년 回軍功臣 ◆ : 실록 1393년 回軍功臣(7월 22일 기사)		
李彬 ?-1410	●	◆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 무신. 1388년 동북면부원수로 요동정벌에 참가하였다가 李成桂 등과 위화도에서 회군함. 1390년 회군공신에 봉하여졌으나, 金宗衍과 판사 趙裕가 이성계를 해치려 한 음모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아 안협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 석방됨.		
李承源	●	◆	
崔雲海 1347-1404	●	◆	
	■ 사료기록 - 고려 말·조선 초의 무신. 본관은 通川. 자는 浩甫. 護軍 祿의 아들로 시호는 襄莊임.		
李茂 ?-1409	●	◆	
	■ 사료기록 -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丹陽. 자는 敦夫. 시호는 翼平. - 1396년 세자 芳碩을 보필하던 鄭道傳·南闇 등이 반란을 모의한다는 정보를 芳遠에게 밀고해 그들을 급습, 평정한 공로로 定社功臣 2등에 책훈됨. - 1409년 閔無咎·閔無疾의 옥사에 관련되어 창원으로 유배되었다가 안성군 竹山에 옮겨져 사형에 처함. 이후 신원이 됨.		
金受益	●		
具尙老	●	◆	
李仁壽	●		
鄭子珪	●		
權和	●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 문신. 본관은 安東. 永嘉府院君 溥의 증손. 父는 檢校政丞 億.		
王承貴 ?-1394	●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 무신. 고려 왕족으로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조선 건국 후에는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으나, 1394년 왕씨 일족을 숙청할 때 살해됨.		
郭忠輔 ?-1403	●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 무관. 본관은 淸州. 1388년 위화도 회군 때 崔瑩의 군대를 격파하고 궁중으로 들어가 花園의 八角殿을 포위해 최영을 붙잡아 유배시켰으며,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움.		
陳乙瑞 ?-1412	●		
	■ 사료기록 -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시호는 襄簡.		

수급 대상자	● : 실록 1392년 開國原從功臣錄券(10월 9일 기사) ◆ : 고려사 1390년 回軍功臣 ◆ : 실록 1393년 回軍功臣(7월 22일 기사)		
李蕤	●		
李沃	●		
?~1409			
金乙貴	●		
?~1405			
鄭臣義	●		
朴永忠	●	●	●(2등 공신)
?~?	■ 사료기록 - 본관은 竹山.父는 朴文瑤. 1388년 요동정벌 때 이성계 휘하의 助戰元帥로 임명.		
尹方慶	●		

4.3 포상 및 특전

본 녹권에 등재되어 있는 李蕤 등 28명에게 각각 밭과 노비를 구분하여 賞給하고 또한 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녹권에 나타난 상급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 賞給 내용

순번	성명	田(結)	奴婢(口)	순번	성명	田(結)	奴婢(口)
1	柳蔓殊	50	5	16	安柱	25	2
2	崔永沚	50	5	17	李彬	25	2
3	郭忠輔	40	4	18	李承源	25	2
4	鄭臣義	40	4	19	崔雲海	25	2
5	崔郢	30	3	20	李茂	25	2
6	金立堅	30	3	21	金受益	25	2
7	尹師德	30	3	22	具成老	25	2
8	都興	30	3	23	李仁壽	25	2
9	陸麗	30	3	24	鄭子珪	25	2
10	鄭曜	30	3	25	權和	25	2
11	李蕤	30	3	26	王承貴	25	2
12	金乙貴	30	3	27	陳乙瑞	25	2
13	朴永忠	30	3	28	李沃	25	2
14	趙琳	30	3				
15	尹方慶	30	3				

위 표에서 각 인물들에게 제시된 말과 노비를 보면 柳蔓殊에게는 말 50결과 노비 5명을 마지막의 李沃에게는 말 25결과 노비 2명을 賜給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권에 비록 각 인물별로 말과 노비를 차등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인물들의 공훈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어 말과 노비가 사급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러한 말과 노비의 賞給은 이후 개국원종공신녹권의 典範이 된 듯하여, 1395년에 발급된 崔有漣·鄭津·陳忠貴·李和尚·權仲和 등의 녹권에서 尹方慶과 金立堅의 例에 따라 말과 노비를 주어 포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녹권 이후 1395년에서 1397년에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과의 차이점으로 책봉된 공신의 부모나 아내를 封爵하고, 자손들에게 賤役을 면제하며,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사면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은 본 녹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조선 초기 開國原從功臣錄券 賞給 비교

原從功臣錄券	發給 年度	田 (結)	奴婢 (口)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子孫 賤役 免제	宥及後世
李薺	1392년	30	3			
張寬	1395년	15		●	●	
韓奴介		15		●		●
陳忠貴		30	3	●		●
鄭津		30	3	●		●
李和尚		30	3	●		●
崔有漣		30	3	●		●
李原吉				●		●
金懷鍊				●		●
龍天奇				●		●
朴乙富		10		●		●
沈之伯		15		●		●

5. 맺음말

이상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족보류에 나타나는 조선 초기 공신녹권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초기 발급된 개국공신녹권 및 개국원종공신녹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1980년대 『李和開國功臣錄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분야별로 연구가 되었고, 최근에 조선 전기 녹권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정리되기도 하였다.

둘째, 현재 조선 초기에 발급된 개국공신녹권과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진존하는 것이 드물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녹권과 개국원종공신녹권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지만 족보에 수록되어 전하는 자료를 찾아 정리한 결과, 李稷과 鄭熙啓의 개국공신녹권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潘忠, 金重寶, 金成富, 權仲和의 개국원종공신녹권과 관련 있는 자료를 각 인물들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 자료인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은 처음 소개가 되는 것으로, 實錄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실록에 언급된 원종공신의 수급 대상자와 본 녹권에 나타나는 수급 대상자를 비교해본 결과 28명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은 실록에서 언급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발급사유와 수급 대상자를 녹권의 내용과 사료에 나타나는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그 결과 발급사유로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조정에 있을 당시부터 함께 간난신고를 겪었던 인물에 대하여 공훈을 치하하는 목적으로 녹권이 발급 되었고, 수급 대상자는 개국원종공신이라는 성격상 모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인물들로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은 사료에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다섯째, 본 녹권에서 모두 28명에게 발과 노비가 賜給되었는데, 인물에 따라서 柳蔓殊에게 발 50결과 노비 5명, 郭忠輔에게 발 40결과 노비 4명, 李薊에게 발

30결과 노비 3명, 安柱 謫 25결과 노비 2명을 賜給하는 등 각각 인물별로 차등을 두었지만 녹권에서 밭과 노비를 차등 지급하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본 녹권과 1395년에서 1397년에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의 상급 내용을 비교한 결과 밭과 노비는 본 녹권의 사급 기준이 다른 녹권의 賞給 典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 이후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부모나 처의 封爵, 자식의 免役, 후손에 대한 免罪 등이 함께 내려진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처음 소개되는 ‘李薊開國原從功臣錄券’의 분석과 2차 자료로서 족보류에 수록되어 있는 개국공신 및 개국원종공신녹권과 관계된 자료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일별해 본 것으로, 현재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과 개국원종공신녹권이 드물게 전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연구대상을 확대시킨 점에 의미를 둘 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編, 『慶州鄭氏良景公派世譜』 1. 서울: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1996.

金賢禎 編, 『金海金氏世譜』; 副正公孝先派 上. 大田: 大都印刷社, 1991.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朴盛鍾, 『朝鮮初期 古文書 史讀文 譯註』.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善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善山金氏大同譜』 卷1. 慶北: 善山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6.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공신을 통해 본 전환기의 조선 역사. 서울: 가람기획, 2003.

이직 著, 홍순석 [외] 編譯, (국역) 『형재이직선생시집』. 서울: 성주이씨문경공파

중회, 1998.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최승희. 『(增補版)韓國古文書研究』. 파주: 지식산업사,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편. 『조선의 공신』.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허홍식. 『한국의 古文書』. 서울: 민음사, 1988.

[논문]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제35집(2009). 153-187.

金炯秀. “權仲和開國原從功臣錄券에 대한 一檢討.” 『한국중세사연구』 제16호(2004). 247-279.

남권희. “柳觀, 辛克敬, 鄭津, 朝鮮開國原從功臣錄券 研究.” 『嶺南學』 제15호(2009). 457-527.

남권희. “龍天奇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分析.”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391-424.

朴道植.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의 研究.” 『人文學研究』 제9집(2005). 155-196.

朴鳳淑.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7집(1991). 257-289.

박봉숙. “朝鮮太祖朝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박성중.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 수록된 功臣들의 姓名 분석.” 『민족문화논총』 제30집(2004). 203-248.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제도 변경 시기에 대한 재론.” 『古文書研究』 45(2014). 27-50.

박천식. “開國原從功臣의 檢討；張寬開國原從功臣錄卷을 中心으로.” 『사학연구』 제38호(1984). 213-284.

朴天植. “開國原從功臣의 研究.” 『군산대학교 논문집』 10(1976). 133-148.

- 朴天植. “戊辰回軍功臣의 冊封顛末과 그 性格.” 『전북사학』 3(1979). 65-124.
- 朴天植. “朝鮮 開國功臣의 冊封過程과 待遇.”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76.
- 서병패. “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상명사학』 10, 11, 12권 합본(2006). 217-251.
- 양태진. “錄券에 관한 書誌的 考察.” 『國會圖書館報』(1984). 63-69.
- 임기영. “宣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연구.” 『嶺南學』 제21호(2012). 257-298.
-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 진나영. “조선시대에 간행된 『功臣錄卷』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천혜봉.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집(1988). 25-67.
- 천혜봉. “金天理 開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 『한국비블리아』 6(1984). 111-131.

[부록]

李和開國功臣錄券(1392)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1392)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1395)
中	乙 : ~을	乙
良中奇是臥乎事	良中 : ~에	良中奇是臥事叱段
叱段	是臥乎事 : ~인 일	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
次知	叱段 : ~판은, ~인즉	乙用良
爲良如教	次知 :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使內向事
是齊	等 : ~들	是白齊
段犯斤	爲良如教 : ~하라고 하신	爲良如教是齊
爲置有亦	右如 : 위와 같이	亦教事是白齊
使內	教事是去有良爾 : 하옵신 일이옵던만큼	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
是去有等以向前	乙用良 : ~을 말미암아	乙用良使內向事
乙良	科科以 : 날날이	乙良
良中	使內向事 : 시행할 일	以
并以	是有亦 : ~이었기에	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
使內良於爲	是白內乎矣 : ~이사옵되	是白有亦
右良如教事是去有等以	叱段 : ~인즉	審是白內乎矣
乙用良	爲白乎所 : ~하옵신바	叱段
使內乎向事	兒如 : ~같이	等亦
是置有亦	是白有良爾 : ~이었사온만큼	爲白齊
審是白內乎矣	等乙良 : 들을랑	爲白齊爲等如
爲去有乙	爲等如 : 모두	是白教等用良更良
白教是乃	令是良 : 시키어	爲白叱乎亦中科科长以
爲白乎所	如 : 다.	教矣
兒如	教是齊 : ~이십니다	等乙良
是去有良尔	是白有良 :	爲於爲
等乙良	乙良 : ~은	教事是白有良尔
爲等如	以 : ~로	教是脉
令是良如教是齊	使內良如 : 시킬지어다	教是齊
等叱段上	教是齊 : ~이십니다	乙良置
爲去有良尔	爲遣 : ~하고	兒如使內白乎脉
是如	爲良如 : ~하여라	向事
等叱段	教諭乃 : ~하신 것이나	并以
令是良如教是齊并以	爲白乎亦中 : ~하옵신 때에	爲白遣

李和開國功臣錄券(1392)	李蕤開國原從功臣錄券(1392)	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1395)
教	教矣： ~하옵시되	爲良如教喻內
使內白乎所	亦中乙良： 경우에는	爲白叱乎亦中
令是良如教是齊爲等如科科以	式： 씩	教事是去有良尔
爲遣	并： 아울러	
爲等如使內向事	等亦中： ~들에게	
爲良如教喻乃	爲乎矣： 하옵되	
爲白乎亦中	爲齊： ~한다	
教矣	教事： ~하옵신 일	
式以	是去有良爾： ~이것이였기에	
爲齊		
乙良竝只		
爲良如		
右如教事是去有良尔		